##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96

발의연월일: 2025. 2. 20.

발 의 자:윤준병·조계원·김문수

허 영·박민규·박희승

정동영 · 신영대 · 김우영

황명선 • 박홍배 • 이워택

김태선 · 서영교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,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계획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·시행할수 있도록 하고,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(出荷)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,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자금 등으로 우선 매입하게 하고, 이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해오고 있음. 이는 외상거래방식으로서 「국가재정법」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. 정

부가 채무를 부담하거나 상환금액 및 상환기간 등을 예산에 담지 않고 있어 명백한 「국가재정법」 위반사항임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, 매입가격과 매입규모, 매입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,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·보조의 규모(원금, 이자,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) 및 융자·보조의 방법과 기간 등의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1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6항 중 "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"를 "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입가격과 매입규모, 매입방법 등에 대하 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이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·보조의 규모(원금, 이자,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한다)
- 2.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 · 보조의 방법과 기간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	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
수급 관리) ① ~ ⑤ (생 략)	수급 관리) ① ~ ⑤ (현행과
	같음)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	6
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	
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	
에서 <u>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</u>	<u>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</u>
<u>다.</u>	<u>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.</u>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
	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
	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
	는 매입가격과 매입규모, 매입
	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
	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
	<u>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
	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이
	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다
	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5월 3
	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
	에 제출하여야 한다.
	1.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

등에 대한 융자·보조의 규모 (원금, 이자,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한다)

 2.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

 등에 대한 융자·보조의 방법

 과 기간